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02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태년 · 임오경 · 문정복
안태준 · 이재강 · 이학영
최민희 · 김준혁 · 김기표
허종식 · 이광희 · 양부남
서영석 · 김영환 · 윤종균
정태호 · 손명수 · 김성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1천분의 253”을 “1천분의 403”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 중 “253분의 50”을 “403분의 1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3분의 60”을 “403분의 1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천분의 50씩 각각 가감하여, 202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에 제7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은 연차별 인상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매년 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u>1천분의 253</u>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u>1천분의 403</u> ----- ----- --.
제71조(납입) ① · ② (생략)	제71조(납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 ----- ----- ----- --.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50</u> 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1. ----- ----- <u>403분의 150</u> ----- ----- ----- ----- ----- ----- -----.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u>253분의 60</u> 에 해당하	2. ----- ----- <u>403분의 110</u> -----

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 4. (생략) ④ (생략)	----- ----- ----- ----- ----- ----- ----- ----- ----- -----. 3.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